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453호

「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9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」 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폐업 시 일시상환 유예 근거를 중기부 고시로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밖에 사업성평가 등 용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

2. 개정안 세부 내용

- (일시상환 유예) 소상공인 폐업 시,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하여 제도화
- (사업성평가 운영)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
- (기타 조문정비)
 - ‘소상공인’ 및 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’ 정의가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의 정의 정비
 - 「소상공인법」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근거를 명확화하고 상환방식 추가
 -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(18.4.2.)에 따른 용어 정비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4. 8. 9.~8. 29. (20일)

4. 의견 제출

- 「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」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(기업금융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- 의견제출 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
- 방문·우편 : (30121) 세종시 가림로 180 (세종파이낸스센터 3차),
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
- 전자우편 (이메일) : hyunpp01@korea.kr, sh983@korea.kr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(044-204-7616, 752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“알림소식-법령정보-입법/행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